

근로감독관의 업무강도 현황*

송민수**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15년 12월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977명 전체(단, 산재 감독 담당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되었다. 최종 응답자는 582명, 응답률은 60%였다.

◆ 신고사건 현황

현재 근로감독관 1인이 월평균 처리해야 하는 신고사건은 평균 4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처리해야 하는 신고사건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청별로 중부청과 대전청이 상대적으로 신고사건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하는 신고사건 건수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1점: 아주 적음, 3점: 적당함, 5점: 너무 과다함)로 살펴본 결과, 평균 4.27점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신고사건 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감독관들이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신고사건 건수는 평균 25.8건으로, 현재 처리하는 신고사건 건수와는 약 20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신고사건이 많을수록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신고사건 수와의 차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량 및 초과근무시간 현황

다음으로 전체 업무량에 대한 인식과 초과근무시간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규근로시간 대비 전체 업무량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1점: 매우 적음, 2점, 3점: 보통, 4점, 5점: 매우 많음)로

* 본고는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고용노동부, 2015)의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ong@kli.re.kr).

〈표 1〉 근로감독관 신고사건 업무 현황(평균 및 표준편차)

		현 월평균 신고사건(건)	현 신고사건 적정정도인식(점)	월 신고사건 적정량(건)	현 신고사건 - 적정량 차이(건)
전 체		45.37 (24.57)	4.27 (0.70)	25.81 (11.79)	19.56
성별	남성	45.51 (18.65)	4.30 (0.69)	25.50 (12.68)	20.01
	여성	45.08 (22.72)	4.23 (0.71)	26.42 (9.80)	18.66
연령대	20대	28.00 (7.18)	3.67 (0.82)	24.00 (9.62)	4.00
	30대	41.08 (17.28)	4.21 (0.68)	24.74 (9.57)	16.34
	40대	46.36 (19.72)	4.33 (0.70)	25.65 (8.68)	20.71
	50대 이상	55.64 (39.50)	4.32 (0.68)	29.81 (23.28)	25.83
소속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4.89 (23.48)	4.17 (0.69)	26.51 (13.93)	18.38
	충부지방고용노동청	48.04 (21.49)	4.35 (0.69)	27.54 (13.18)	20.5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2.89 (17.41)	4.22 (0.78)	24.71 (9.38)	18.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41.42 (27.91)	4.42 (0.58)	21.79 (6.64)	19.6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40.48 (17.65)	4.11 (0.68)	24.73 (8.62)	15.7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51.10 (29.88)	4.49 (0.67)	24.62 (9.31)	26.4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5),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N=582).

〈표 2〉 근로감독관 전체 업무량에 대한 인식 및 초과근무 현황(평균 및 표준편차)

		정규 근로시간 대비 업무량(점)		1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 체		4.26	0.78	13.00	11.14
성별	남성	4.25	0.77	14.04	11.99
	여성	4.30	0.78	10.98	8.93
연령대	20대	3.83	0.98	10.08	8.76
	30대	4.24	0.72	12.35	11.01
	40대	4.34	0.75	13.48	11.37
	50대 이상	4.06	0.95	13.30	10.77
소속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26	0.78	13.37	11.15
	충부지방고용노동청	4.34	0.72	12.77	10.4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15	0.94	15.31	13.4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4.44	0.62	12.65	8.5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4.02	0.75	10.13	10.4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36	0.76	13.26	12.1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5),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N=582).

살펴본 결과, 평균 4.26점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들은 본인들의 업무 절대량이 정규근로시간 내에 수행하기에는 매우 벅차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근로감독관 1인 평균 1주일에 1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은 주당 약 53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 인력 현황

다음으로 근로감독관들의 지방청별 인력 적정성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실제로 현원 대비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 청(지청)의 근로감독관 수가 적정한지를 물어보았는데,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초래’라는 응답이 46.6%, ‘시급하게 인력충원이 필요’라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다. 2개 선택지의 응답이 약 83%로,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이 현재의 인력 규모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2.7%(16명), ‘부족하지만 견딜만 함’이라는 응답은 14.3%에 그쳤다. 소속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과 광주청의 경우, ‘부족하지만 견딜만 함’이라는 응답이 20% 넘게 나타난 반면, 중부청, 대구청, 대전청의 경우, ‘적정하다’와 ‘부족하지만 견딜만 함’이라는 응답을 합쳐 약 10% 내외로 나타났다.

〈표 3〉 근로감독관 인력 적정성 인식

(단위 : %)

		적정하다	부족하지만 견딜만함	부족하여 어려움을 초래	시급하게 인력충원 필요
전체(582명)		2.7	14.3	46.6	36.4
성별	남성(385명)	2.3	14.0	46.0	37.7
	여성(197명)	3.6	14.7	47.7	34.0
연령대	20대(6명)	-	33.3	66.7	-
	30대(215명)	1.9	14.9	51.2	32.1
	40대(292명)	2.7	14.4	42.1	40.8
	50대 이상(69명)	5.8	10.1	49.3	34.8
소속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155명)	3.9	17.4	47.7	3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179명)	2.2	8.4	51.4	38.0
	부산지방고용노동청(81명)	2.5	21.0	43.2	33.3
	대구지방고용노동청(48명)	4.2	4.2	43.8	47.9
	광주지방고용노동청(66명)	1.5	25.8	45.5	27.3
	대전지방고용노동청(53명)	1.9	9.4	35.8	52.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5),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N=582).

앞서의 질문에서 ‘적정하다’를 제외한 응답을 한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근로감독관의 충원 규모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과의 근로감독관 인원과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근로감독관 인원을 조사하였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과의 근로감독관 평균 인원은 약 10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 충원이 필요한 인원은 약 4명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해보면, 현 근무인원 대비 약 45% 정도의 인원충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속청별로 살펴보면, 현재 근무인원이 적은 대구청과 광주청에서 상대적으로 현원 대비 충원율을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근로감독관 충원인력 적정성 인식

(단위 : 명, %)

		현재 인원		충원필요 인원		현원 대비 충원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 체		9.83	3.74	4.04	4.03	44.93	41.70
성별	남성	9.80	3.64	4.09	3.92	46.20	40.19
	여성	9.89	3.94	3.93	4.24	42.21	41.77
연령대	20대	11.00	4.24	1.90	0.22	19.64	7.58
	30대	9.56	3.57	4.08	4.44	46.60	42.78
	40대	10.05	3.96	4.12	4.01	43.89	40.34
	50대 이상	9.74	3.28	3.72	2.72	45.02	36.27
소속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0.57	3.10	3.77	4.06	40.76	41.89
	충북지방고용노동청	10.00	4.27	4.22	4.52	41.42	39.8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9.67	2.11	3.49	3.04	45.36	41.9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7.95	2.48	4.03	3.80	57.22	45.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9.10	2.37	4.27	3.56	51.33	40.9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39	6.11	4.73	4.30	48.18	32.3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5),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N=582).

이상과 같이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의 정원은 정체되어 있다. 2010년 말 기준, 근로감독관 수는 1,059명, 신고사건 수는 303,770건이었다. 인당으로 환산해보면,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 1,398개소, 담당근로자 수 12,011명, 신고사건 처리 287건이었다. 2014년 말 근로감독관 수는 1,074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신고사건 수는 336,30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근로감독관 1인당 감당해야 할 사업장 수는 1,571개소, 담당근로자 수는 13,727명, 신고사건은 353건으로 증가했다.

〈표 5〉 행정대상 및 업무량과 근로감독관 증원 추세

(단위 : 건, 만 개소, 만 명,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신고사건 수	303,770	305,657	323,132	334,007	336,308
사업장 수	148	151	152	161	169
근로자 수	1,272	1,316	1,388	1,434	1,474
감독관 수	1,059	1,049	1,043	1,059	1,074

자료 : 고용노동부(2015), 「노동정책실 업무관련 통계」.

업무량의 폭증은 근로감독의 지연처리율과 초과근무시간 확대로 이어졌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신고사건 업무의 평균처리기간은 46.1일, 지연처리율은 21.2%에 달한다. 이와 같은 여건은 근로감독 사전 예방업무와 지도감독업무의 저하, 위반적발건수의 감소 등 전반적인 대인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들은 주당 1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업무의 상당부분은 월 45건 이상에 달하는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 근로감독관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월평균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약 26건으로, 현재 실제처리 사건 수와 약 20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업무강도의 강화는 근로감독관들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전 직의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충원, 직무재설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LI**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5), 「노동정책실 업무관련 통계」.

_____ (2015),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15),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1월호